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0
------	----

2018. 9. 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오중석 의원 외 4명(찬성의원 7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8.9.7.) 상정, 검토보고, 의결(수정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오중석 의원)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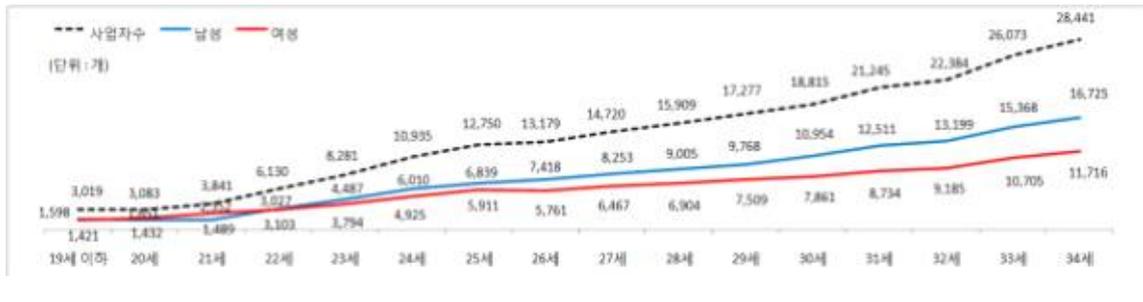
#### 가. 조례안의 개요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청년창업지원계획의 수립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 청년창업 현황과 문제점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내수 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에서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청년창업에 대한 교육 여건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미숙하고 관련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청년 창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편임.
  - 국세청의 통계(2016)에 따르면,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청년창업 비중은 1.7%(남성은 1.8%, 여성은 1.5%)에 불과함.

## 연령별·성별 청년창업 현황



- 또한, 청년창업 기업의 업태 현황을 살펴보면, 생존력이 낮은 소매업(68,680개), 음식·숙박업(42,808개), 서비스업(24,380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기반 중심의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업태별 청년 창업현황



- 한편, 서울시는 종전에 창업사업자의 연령에 따라 청년창업 센터와 장년창업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에 창업허브로 통·폐합되면서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창업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의 종전 연령별 창업센터 현황>

구 분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강남	강북	창업플러스	
연 면 적	6,964㎡ (공구상가 5층)	4,691㎡ (2개동)	8,805㎡ (3개동)	3,998㎡ (1개동)
입주기업	159개 팀	41개 팀	101개 팀	179개 팀
장 소	가든파이버 내	舊마포구청사	舊용산구청사	舊, 서울의료원 후관

- 창업허브는 분산된 창업지원 인프라의 통합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 주기별(Pre-BI, BI, Post-BI)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음.

<창업허브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마포 공덕동 370-4외 1필지)</li> <li>■ 규 모 : 본관동17,753㎡(지하1/지상10), 별관동 5,906㎡(지상4)</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창업기업 입주·보육</li> <li>- 창업 유관기관 유치 및 협업</li> <li>- 스타트업, 전문가 교류·협력 지원</li> </ul> </li> </ul>	
---	--

- 창업허브는 현재 150여 개의 입주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440여 개의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업기업에게 보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투자유치, 해외진출, 자금지원,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1)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2조)

- 안 제2조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와 제5조의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sup>1)</sup>

-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준용하게 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대상인 청년창업자가 지나치게 적어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창업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창업자 연령 분포〉

(단위: 개, %)

종사자 규모	창업기업 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4명	1,451,719	1.2	14.5	33.7	35.3	15.3
5~9명	163,997	3.1	16.0	39.2	31.0	10.7
10~19명	28,360	0.7	19.1	34.7	35.8	9.8
20~49명	10,120	0.7	8.9	55.4	25.0	10.1
50~99명	4,880	3.3	10.7	34.1	42.7	9.2
100~299명	2,403	10.3	8.0	49.7	26.1	5.9
합 계	1,661,481	1.4	14.6	34.4	34.8	14.7

주: 동 조사는 2015년에 수행되었으나, 기준연도는 2012년임(중소기업청, 「'12년 기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실태조사 주요결과」, 2015. 10. 14.)

자료: 통계청

- 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창업자를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sup>2)</sup>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해 청년창업자의 연령을 제정안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 (2) 청년창업지원계획(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열거하면서 청년 창업 실태조사를 포함해 창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의 내용에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3) 청년창업의 지원(안 제5조에서 안 제7조, 제11조에서 제14조)

- 제정안은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전문컨설팅·창업자금·전문교육서비스의 제공(안 제5조), 청년창업 오디션의 개최(안 제5조의2), 투자유치(안 제7조), 특례보증의 제공(안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체계의 구성(안 제6조), 청년 창업에 관한 홍보(안 제11조), 청년창업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청년창업 지원 기여자와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한 표창(안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청년창업 지원사업들은 현재 서울시의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청년층만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sup>3)</sup> 향후 청년창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의 개발이 필요함.

#### (4)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지원센터의 입주대상자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예정자로 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인 지원 센터를 설치하자는 취지이고, 효율적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위탁의 해지사유,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면서 기타 사항에 대한 준용법규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을 규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법규명을 수정하여야 함(같은조 제4항).
- 또한, 안 제9조는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부실·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음.

3) 현재 창업허브에서 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및 제품 상용 촉진화 사업, 우수 대학생 동아리 사업화 멘토링 지원이 있음.

- 한편, 제정안은 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들을 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라. 종합의견

- 청년 고용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sup>4)</sup>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청년실업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현재 서울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정책과 지원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이 조례안이 입법화되어 본격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는 청년창업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울러, 제정안의 입법체계 및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제5조의2)과 부자연스러운 문구 그리고 인용법규의 오류 등이 발견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2017년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 2,000명 중 취업자가 390만 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된다(매일경제, 韓 청년고용률 42%...OECD중 '최악', 2018년 7월 10일 보도).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0
----------	-------

제안년월일 : 2018년 9월 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제정안의 입법체계와 형식 등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인용법규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름(안 제2조).
- 나.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등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 제1항).
- 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대상은 청년창업자로 서울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으로 규정함(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4,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로 한다.

안 제5조 중 “청년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오디션”을 “경진대회”로 한다.

안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며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조명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창업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조명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창업지원센터”로 하며 제1항의 “청년창업 예정자인 서울시민으로”를 “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로 한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를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u> 」 제2조 및 「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u> 」 제5조의4, 그 밖의 <u>관계 법령의 규정</u> 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u> 」 제5조의4에 따른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u>청년 창업자</u> 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u>오디션</u>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u>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u> 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u>경진대회</u>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의2(청년창업 <u>오디션</u>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u>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u> 를 선발하는 <u>오디션을</u>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오디션</u> 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청년창업 <u>경진대회</u>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u>청년 창업자</u> 를 선발하는 <u>경진대회를</u>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경진대회</u> 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 제7조 (생략)	제7조 ~ 제8조 (제정안과 같음)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p>하여 <u>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u>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u>다음 각 호</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u>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u>」를 준용한다.</p> <p>⑤ (생략)</p>	<p>위하여 <u>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u></li> <li>2. <u>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u></li> <li>3. <u>제품 홍보·마케팅 지원</u></li> <li>4. <u>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u></li> <li>5. <u>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u></li> <li>6. <u>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u></li> <li>7. <u>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5. (제정안과 같음)</p> <p>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u>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를 준용한다.</p> <p>⑤ (제정안과 같음)</p>
<p><u>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u> (생략)</p>	<p><u>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u> (제정안)</p>

략)	과 같음)
<u>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u>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u>청년창업 예</u> <u>정자인 서울시민으로</u> 한다. ② ~ ③ (생략)	<u>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u> 창업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u>청년 창업자로 시</u> <u>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u> 한다.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u>제11조 ~ 제13조</u> (생략)	<u>제12조 ~ 제14조</u> (제정안과 같음)
<u>제14조(표창) 시장</u> 은 청년창업 지원 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u>청년 창</u> <u>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u>	<u>제15조(표창) 시장</u> 은 청년창업 지원 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u>청년 창</u> <u>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u> <u>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
<u>제15조</u> (생략)	<u>제16조</u> (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

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